

충청북도의회의원(이길하) 징계요구의 건

의안 번호	44
----------	----

제안년월일 : 1998. 11. 2
제안자 : 윤리특별위원회
위원장

1. 주 문

- 충청북도의회 이길하 의원을 지방자치법제80조에 의거 징계종류를 30일간 출석정지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- 의원의 징계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함.

3. 기타사항

- 관련법규 : 지방자치법제80조제1항제3호